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47
----------	-----

제출년월일: 2024. 2.
제출자: 평창군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1차 변경계획은
- 토지 처분: 1건, 10필지, 445,987㎡, 6,233,483천원

3. 붙임자료

-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1부
- 2024년 제1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부서별)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붙임 나]

2024년도 제1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 자)
	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처분 합계(1건, 10필지)			445,987	6,233,483			
소계 (1건, 10필지)			445,987	6,233,483			
1	임	대관령면 황계리 산304	97,984	1,371,776	2024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균유 재산 매각	평창군
2	전	대관령면 황계리 546-208	1,161	69,660	2024		
3	전	대관령면 황계리 546-209	1,188	71,280	2024		
4	전	대관령면 황계리 546-210	1,875	112,500	2024		
5	전	대관령면 황계리 546-211	647	38,820	2024		
6	전	대관령면 황계리 546-212	3,964	237,840	2024		
7	전	대관령면 황계리 546-213	934	56,040	2024		
8	전	대관령면 황계리 546-214	1,121	61,655	2024		
9	임	대관령면 황계리 산302-2	240,813	3,010,162	2024		
10	임	대관령면 황계리 산302	96,300	1,203,750	2024		

[붙임 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부서	쪽
1.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	회계과 (정책담당관실)	6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사업」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학교 운영재단)에서 우리 군에 연수시설 및 교육시설 건립을 제안함에 따라, 학교법인의 연수시설 및 교육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일원
- 대 상 : (토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외 9필지
- 예정가격 : 6,233,483,500원 ※가감정가격
- 추진기간 : 2024. ~ 2033.

□ 추진사항

- 평창군·동원육영회 상호 발전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2. 8. 24.
* 교육·문화분야 협력, 연수시설 건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용인 한국외대부고 견학 및 관계자 면담 : 2023. 2. 15.
-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마스터플랜 설명회 : 2023. 4. 5.
-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건립추진단 구성 : 2023. 5. 15.
-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실무회의 : 2023. 11. 16./ 12. 11. / 2024. 2. 20.
-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 종합지원계획 수립 : 2024. 2. 15.

※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 제안 사업 개요

- 소 재 지 :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일원 / 445,987㎡(약 134,911평)
- 투자규모 : 민간투자 약 3,600억원
- 제 안 사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이사장 김종철)
- 사업기간 : 2024. ~ 2033.
- 사업내용
 - (1차 사업) 동원육영회 연수시설 건립(수련시설, 숙박시설)
 - (2차 사업) 국제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건립(교사동, 복지동, 강당동, 지역상생구역 등)
- 사업 추진 계획
 -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 및 1차 사업 추진 : 2024. 3. ~ 2027.
 - 2차 사업 추진 : 2025. ~ 2033

□ 처분대상 재산내역

○ 토지(10필지)

(단위 : m²,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재산가액		매각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계	10필지		445,987	445,987	2,752,231,320	6,233,483,500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	임	97,984	97,984	538,912,000	1,371,776,000	2024	평창군
	546-208	전	1,161	1,161	46,207,800	69,660,000		
	546-209	전	1,188	1,188	47,282,400	71,280,000		
	546-210	전	1,875	1,875	82,875,000	112,500,000		
	546-211	전	647	647	28,597,400	38,820,000		
	546-212	전	3,964	3,964	175,208,800	237,840,000		
	546-213	전	934	934	41,282,800	56,040,000		
	546-214	전	1,121	1,121	52,350,700	61,655,000		
	산302-2	임	240,813	240,813	1,285,941,420	3,010,162,500		
	산302	임	96,300	96,300	453,573,000	1,203,750,000		

※ 예정가격은 가감정 평가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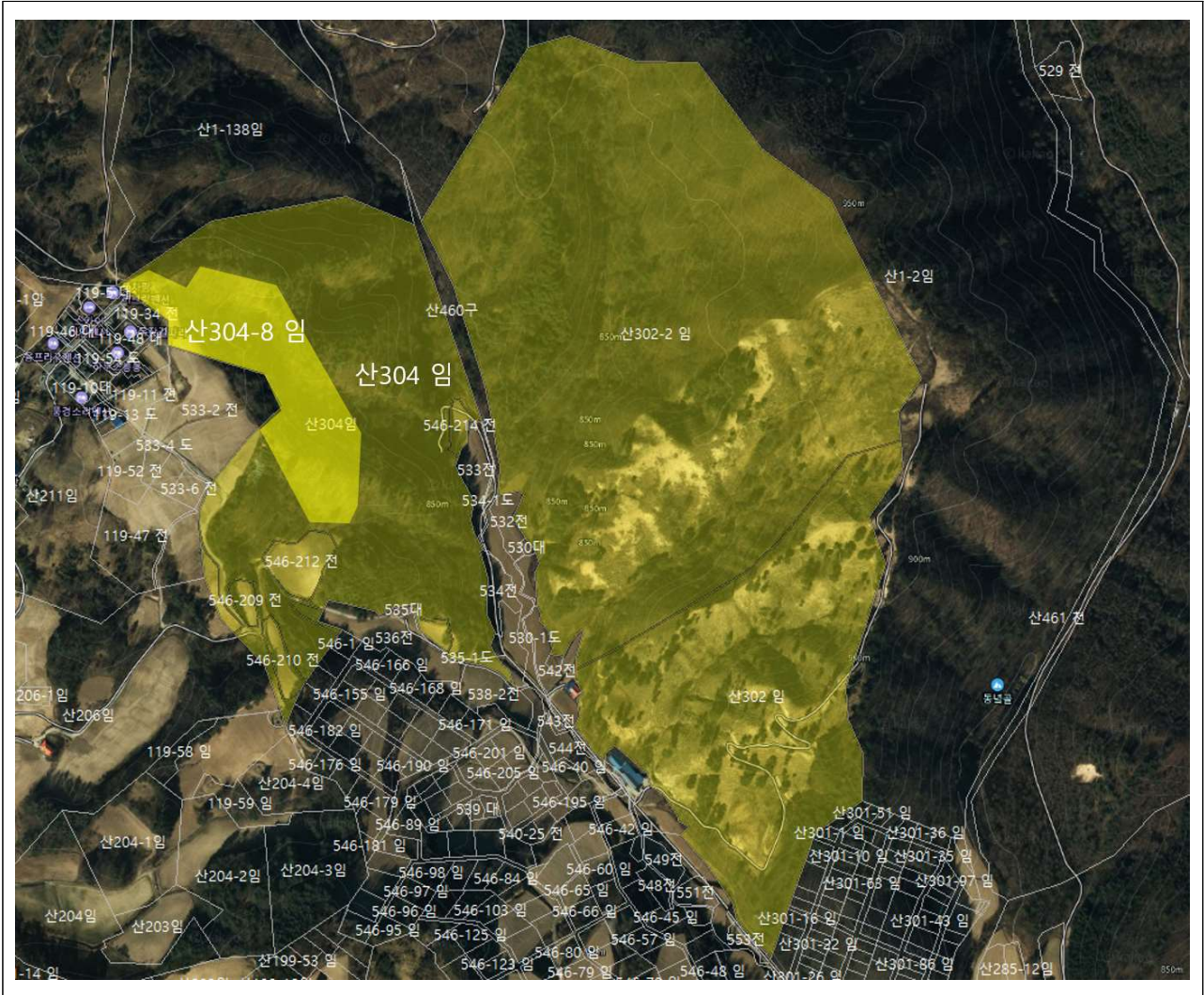
□ 향후계획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반영(의회 의결) : 2024. 3월
- 공유재산 감정평가 : 2024. 3월
- 공유재산 매각 : 2024. 3 ~ 4월

□ 위치도



□ 지적도



※ 황계리 산304-8번지(산림탄소상쇄의 숲) 토지분할 및 매각대상 제척

- 산림탄소상쇄제도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산주·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
- 사업주체 : 한국예탁결제원
- 유지기간 : 2012년 ~ 2042년
- 사업면적 : 2.46ha
- 조림수종 : 자작나무 등

[붙임 라]

<관계법령 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신설 2022.12.30.>